

포페이팅 기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함)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은 [] 자로 본 포페이팅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이라 함)를 체결한다.

고객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이 수익자로 명시된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 매입을 은행에 요청하고, 은행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신용장을 매입하게 되며, 은행과 고객은 은행의 신용장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매입

1.1 고객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또는 기타 은행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은행에 매입요청을 할 경우, 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신용장 및 기타 부속서류들을 검토한다. 고객의 매입요청은 매 건마다 은행의 자체적인 심사에 의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

1.2 금융기관을 통하여 제출된 신용장에 대하여는 부록 C의 내용을 따른다.

제 2 조. 지급

2.1.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의 원본을 적합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은행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i)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확인은행(확인 신용장의 경우)에 의하여 인수된 (accepted) 신용장.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신용장 매입/제시은행에게 신용장 서류의 인수와 만기일을 확인하고, 신용장 매입/제시은행의 지시에 따라 만기에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인증된 텔레克斯(tested telexes) 또는 스위프트(Swift) 전문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은행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다.
- (ii) 신용장 상의 권리를 은행에게 양도하는 고객의 서면 양도통지서 (부록 A 와 B의 양식 준용, 이하 "채권양도통지서")
- (iii)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확인 신용장의 경우)의 확인서(은행이 인정하는 양식이어야 함)
- (iv) 매입의 대상이 되는 신용장 및 조건변경통지서(amendments)의 진정하고 완전한 원본 및 신용장의 부속서류

2.2 금융기관을 통하여 제출된 신용장은 부록 C의 내용을 따른다.

제 3 조. 채권의 양도

3.1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신용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이 은행에게 신용장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고객을 대리하여 통지할 권한이 있다.

3.2 고객이 매입 시점에 은행에 서면으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은행에게 신용장에 제반 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자동적·무조건적·확정적으로 양도한다.

3.3 은행은 고객에게 부록 A 와 B 의 양식으로 각 신용장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4 조. 비소구

4.1. 제 4.2 조와 제 4.3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1.1 조에 따라 신용장의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 상의 채무자(신용장의 수입상, 개설의뢰인, 또는 대금지급을 부담하는 자(account party) 및 신용장 개설은행/확인은행 포함)의 채무불이행, 지불유예, 외환관리, 통화제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용장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은 고객 또는 이전의 소지인/어음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2 은행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전액을 소구할 수 있다.

(i) 고객이 제 5 조의 진술과 보증을 위반한 경우

(ii) 고객이 신용장 발행의 기초가 된 수입상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은행이 매입한 신용장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iii)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은행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하여 서면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iv) 특정 지역이나 국가간의 수출입 금지조치(엠바고), 제한 또는 제재 관련 이슈를 위반하는 서류 또는 거래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해당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의 지연이나, 감액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게, 은행이 위 사유 발생을 고객에게 서면 통지한 시점에 즉시 고객에게 기 지급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위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연 3.00%의 비율에 따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며,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 된 이자율을 적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위 명시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은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즉, 매입 신용장의 약정된 만기일 익일)부터,

변제 되어야 할 전체 금액이 실제 은행에 입금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부과된다.

4.3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신용장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고객이 요청 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완전한 소구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매입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동의 할 수 있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정당한 인수 통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위 4.1 조 및 4.2 조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고객에 대한 소구권을 가질 수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신용장 미인수 시에는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완전한 소구권을 보유하며, 고객은 은행이 매입하였던 전체 금액의 지급을 은행이 청구에 의해 즉시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연 3.00%의 비율에 따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며,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 된 이자율을 적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위 명시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은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즉, 매입 신용장의 약정된 만기일 익일)부터, 변제 되어야 할 전체 금액이 실제 은행에 입금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부과된다.

제 5 조. 진술과 보증

고객은 본 계약의 체결시, 매입요청시, 은행으로부터 지급 수령시 및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의해 매입된 신용장의 수출채권에 대한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동안,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 한다.

- (i) 고객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이다.
- (ii) 고객은 거래대상이 되는 신용장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과 이익(이하 '신용장 관련 권리등')을 보유하며, 신용장 관련 권리등에 대한 유치권, 저당권, 청구권, 부담금 또는 제한물권이 없이 은행에 매도 및 양도한다.

신용장 관련 권리등은 채무자(개설인 혹은 개설신청인)에 대해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신용장의 채무자는 신용장 관련 권리등에 따라 합법적이고 이체 가능한 자금을 통해 최종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감이나 상계가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권리 및 청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되는 데에 제한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은 신용장에 대하여 제 3 자의 반대청구 없이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이익을 은행에 양도하는 데에 필요·충분한 법적 권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

(iii) 은행에 제출한 신용장(조건변경통지서 포함) 및 허가서, 승인서 등 기타 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유효하다.

(iv) 고객은 관련 수출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료·이행한다.

- (v) 본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계약 상의 모든 의무는 법에 의해 집행 가능하다.
- (vi) 고객은 은행이 매입하거나 매입할 예정인 신용장의 수출채권을 타 기관에 양도/청구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vii)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은행이 매입한 신용장 관련 권리를 보존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한다.
- (viii) 고객은 은행의 신용장 매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양도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 이전, 매도 및 기타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는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이전, 매도 및/또는 처분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통지 받을 권리(포기)를 포기한다.

제 7 조. 적용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은행이 계약갱신여부를 최고(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 및 갱신된다. 이 경우 자동 갱신된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원 계약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이 만료 혹은 해지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해 실행된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의 거래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계속 적용된다.

제 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8.1.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견적서(term sheet)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8.2. 본 계약 및 그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고객과 은행간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 9 조. 일반거래약관

본 계약에 의한 거래는 고객이 별도로 제출한 (i)수출거래약정서와 (ii)기업금융기본약관이 적용되며, 위 약정서 및 약관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제 10 조. 세금 및 관세

본 계약에 따라 은행이 매입 및 보유한 신용장 대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세금이나 관세 또는 부과금으로 인해 위 신용장의 대금이 차감될 경우, 차감된 금액은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즉시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11 조. 언어

본 계약은 국문본 및 영문본으로 체결된다. 국문본과 영문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12 조. 부록

부록은 본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은행과 고객은 적법하게 수권 받은 대표자를 통해 상기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명

By _____
서명권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By _____

By _____

부록 A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회사명 : _____

제목: 채권양도 통지

신용장 정보

1. 개설은행 :
2. 확인은행 (확인신용장일 경우) :
3. 신용장 번호 :
4. 신용장 금액 :
5. 신용장 기간 :
6. 선적물품 :

본인/당사는 귀행과 _____자에 체결한 포페이팅 계약에 의거하여 상기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금액과 만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장/지급 금액 : 미화 _____
만기일 : _____

본인/당사는 상기 신용장의 수출채권의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취소불가능의 조건으로 귀행에 양도, 매도 및 이전하기로 합니다.

본인/당사는 귀행에 양도한 상기 신용장의 수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 청구하였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당사는 상기 신용장의 수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장소 : 서울 / 날짜 _____

수출자 명판 & 인감

APPENDIX B
부록 B

수신: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신용장 확인은행의 명칭 및 주소)

발신: _____

제목: 채권양도통지

_____ 통지은행명 _____ 을 통해 제출된 _____ 개설은행명 _____ 이
_____ 날짜 _____ 에 개설한 USD _____ 의 취소불가능 신용장(번호:

_____)

신용장 정보

1. 개설은행 명 : _____
2. 확인은행 명(확인 신용장의 경우) : _____
3. 신용장 번호 : _____
4. 신용장 금액 : _____
5. 신용장 기간 : _____
6. 선적 물품 : _____

본인/당사는 상기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금액과 만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장/지급 금액 : 미화 _____
만기일 : _____

본인/당사는 상기 신용장 상의 미화 _____ 에 해당하는 수출채권을 취소불가능의 조건으로 아래에 명시된 은행에 양도하였습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번지 영풍빌딩 16 층

장소: 서울 / 날짜 _____

<수출자 명판 및 인감 날인>

부록 C

고객이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하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장을 제출한 경우 매입 및 지급 조건

부록 1 (매입)

- 1.1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에 제출된 신용장에 대해서도 본 계약 제 1 조(매입)에서 명시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1.2 위 제 1.1 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은행은 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객이 직접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1.3 금융기관을 통하여 은행에 신용장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은행의 신용장 매입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록 2 (지급)

2.1 본 계약 제 2 조(지급)에서 명시한 조건들은 제 (iv)항의 신용장의 진정하고 완전한 원본에 관한 조건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된 신용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된 신용장이 사본인 경우에는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2 은행은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부록 3

3.1 본 계약에 명시된 기타 모든 조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된 신용장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